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안 미 자 의원)

의안 번호	26-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6. 1. .

발의자 : 안미자, 권영숙, 권인순,
오옥자, 이한동, 채우진,
최은하, 홍지광

1. 개정이유

인도 위 차량 돌진 사고, 개인형 이동장치(PM) 사고 등 이동 수단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음. 이에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방호 울타리 등 보행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보행자 안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, 방호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(안 제9조, 신설)

나. 조문 수정

: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→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
(안 제10조)

: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→ 사업 현장의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(안 제12조)

3. 관계법령

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4조

4. 조례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5.1.8. ~ 1.14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보행안전시설의 설치) 구청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11조(종전의 제10조)의 제목 “(보행자 안전시설 설치)”를 “(사업시행자 등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)”로 한다.

제12조(종전의 제11조)의 제목 “(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)”을 “(사업 현장의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(약칭: 보행안전법)

[시행 2023. 9. 15.] [법률 제19234호, 2023. 3. 14., 타법개정]

제3조(보행권의 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,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, 성별, 나이, 종교,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·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.

1. 시설물의 설치,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.

2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,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3. 보행정책의 수립·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.

4.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·합리적으로 조성·정비·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·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
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
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, 임산부, 어린이,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
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
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
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
있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교통건설국 도로개선과 반지은
연락처	02-3153-9793